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

### Q 아동 신분 보호법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 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 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 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 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뺀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뺀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 (213)291-9980

# 햇딜 블랙프라이데이 대박세일



전품목 30% 대박 찬스!

무료 배송  
Free Shipping

2024신제품 쾌적 숙면가전, 전자파안심, 분리난방, Wi-Fi

경동나비엔 EME511 카본매트

싱글 \$230.3
퀸 \$279.3
킹 \$314.3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손목 아프지않게 물기 짝 짜주는, 힘들지 않은 팔순이!

수분제거용 만능 팔순이 다짜고짜

요거트, 밀반찬 쉽게!
White, Pink, Mint \$54



QR코드 찍고 햇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홈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